

공용 주거 시설의 수영장 운영 재개 프로토콜

최신 업데이트:

2021년 5월 21일: 실내 수영장, 온수 욕조, 사우나, 한증막,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은 수용인원의 50%에 한해서 재개를 허용한다고 업데이트했습니다. CDC의 최신 청소 지침에 맞춰 청소 요구사항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주거 시설 수영장 구역에서 열리는 모든 비공식 친목 모임은 카운티의 비공식 친목 모임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COVID-19 사례 발생률, 입원율, 사망률이 꾸준히 낮게 유지되고 있으나, COVID-19 은 여전히 지역사회에 고위험을 초래하며, 모든 주민이 COVID-19 확산 위험을 낮추기 위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운영과 활동을 변경해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주정부의 안전한 경제 체계를 위한 청사진에서 규정한 “노란색 등급”에 진입했기 때문에, 일부 지역 활동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본 프로토콜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주거 시설 운영자는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COVID-19의 잠재적 확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주의 깊게 운영해야 하며 본 프로토콜의 요구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프로토콜은 아파트, 콘도 및 입주자 협회에 위치한 수영장의 사용에 적용됩니다.

주거 시설의 야외 수영장은 모든 수영장 이용자가 다른 가구의 구성원과 육(6) 피트의 신체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제한하면 일상적인 사용을 위해 개방할 수 있습니다. 주거 시설의 실내 수영장은 해당 건축법 또는 소방법에 따라 수용인원의 50%에 한해서 일상적인 사용을 위해 개방할 수 있습니다.

실내외 온수 욕조, 실내 사우나와 한증막을 개방할 수 있습니다. 실내외 온수 욕조는 한 가구의 사용 또는 다른 가구의 구성원과 6피트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방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이용자가 COVID-19 예방접종을 완료했거나, 한 가구의 구성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예방접종을 완료했고, 가구에 함께 사는 구성원 중에 COVID-19에 걸리면 중병으로 발전할 위험이 큰 고위험군이 없는 경우에는 6피트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서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우나와 한증막은 수용인원의 50%로 반드시 제한해야 합니다. 화장실과 탈의실은 수용인원의 50%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습니다.

주거 시설의 수영장에서 개최되는 모든 비공식 모임은 카운티의 비공식 친목 모임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http://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docs/people/InformalSocialGatherings.pdf>.

노란색 등급의 경우, 비공식 친목 모임의 참가 인원은 야외에서는 100명으로, 실내에서는 실내 공간 수용인원의 50% 또는 50명 중 더 적은 인원로 제한합니다. 모임의 모든 참가자가 예방접종을 완료했거나, 한 가구의 구성원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예방접종을 완료했고 해당 가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누구도 COVID-19에 걸리면 중병으로 발전할 위험이 큰 고위험군 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본 프로토콜에 적용되는 모든 수영장 운영자는 아래에 열거된 해당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조치가 귀하의 시설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프로토콜에서 "가구"라는 용어는 "단일 생활 단위로 함께 사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기숙사, 남학생회, 여학생회, 수도원, 수녀원, 거주자 돌봄 시설과 같은 기관 단체 생활을 포함하지 않으며, 하숙집, 모텔, 호텔과

같은 상업 거주 형태도 포함되지 않습니다.¹ "직원"과 "종업원"이라는 용어는 종업원, 자원봉사자, 인턴 및 수습 직원, 학자 및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타 모든 개인들을 포함합니다.

"수영하는 사람," "참가자," "방문자," "관람객" 또는 "고객"이라는 용어는 일반인 및 사업체 또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종업원이 아닌 다른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업소", "현장" 및 "시설"이라는 용어는 허용된 활동을 수행하는 건물, 부지 및 인접한 모든 건물 또는 부지를 의미합니다.

본 프로토콜에서 다음 사람은 "COVID-19 예방접종을 완료*"했다고 간주됩니다:

- 2회 접종 COVID-19 백신(예: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또는 모더나)의 2차 접종 후 이(2)주 이상 경과, 또는
- 1회 접종 COVID-19 백신(예: 존슨앤존슨(J&J/얀센))의 접종 후 이(2) 주 이상 경과.

참고: 이 문서는 추가 정보 및 자료가 확보되면 업데이트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버전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웹사이트 <http://www.ph.lacounty.gov/media/Coronavirus/>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본 점검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 (1) 직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직장의 정책 및 실천 방법
- (2) 신체적 거리두기를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
- (3) 감염 통제를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
- (4) 직원 및 일반 대중과의 소통
- (5) 중요 서비스를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

시설 재개 프로토콜을 계획할 때 위 5가지 핵심 부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본 프로토콜에 적용되는 주거 시설 수영장의 운영자는 아래에 열거된 모든 해당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조치가 왜 적용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체 이름:

시설 주소:

✍

게시 날짜:

A. 직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직장의 정책 및 실천 방법

(시설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표시하십시오)

시설/부지에 현장 직원이 없는 경우 여기에 표시하십시오. 섹션 B로 이동하십시오.

집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합니다.

취약계층 직원(만 65세 이상, 만성 질환이 있는 직원)에게 가능할 때마다 집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할당하고, 해당 직원은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나 직업 보건 서비스 기관과 상의하여 적절한 직장 복귀

¹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규정, 제22권 §22.14.060 - F. 가족의 정의. (Ord. 2019-0004 § 1, 2019.)

https://library.municode.com/ca/los_angeles_county/codes/code_of_ordinances?nodeId=TIT22PLZO_DIV2DE_CH22.14DE_22.14.060F.

시기를 결정합니다.

- 모든 직원(시설 직원 및 운영 직원 포함, 통칭 "직원"이라고 함)에게 아프거나 COVID-19 확진자에게 노출되면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 직원들이 집에 머무를 때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자격 대상 직원들에게 정부 또는 고용주의 휴가 혜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1년 COVID-19 유급 병가 법규 부록에 따른 직원의 병가 권리를 포함한, 병가와 COVID-19 근로자 보상 혜택 등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에 관해 추가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LA 카운티 DPH의 입장 증상 검사 지침에 따라, 직원과 다른 방문객들이 직장에 들어오기 전에 입장 증상 검사를 시행합니다. 검사에는 기침, 숨가쁨, 호흡곤란, 발열이나 오한, 및 이전에 없던 미각이나 후각 상실 그리고 현재 고립 또는 격리 명령을 수행 중인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직원이 도착하는 즉시 직접 수행하거나, 온라인 확인 시스템과 같은 대안을 통해 또는 직원에게 이런 증상이 있으면 시설에 입장해서는 안 된다고 알리는 안내문을 시설 입구에 게시하는 것을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능하면 직장에서 체온을 검사해야 합니다.
 - 음성 증상 검사(출입 허가). 증상이 없고 지난 14일 동안 COVID-19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은 사람에게 당일 입장 및 근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양성 증상 검사(출입 비허가):
 - COVID-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고,² 지난 10일 동안 COVID-19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현재 격리 명령을 수행 중인 사람은 입장 또는 현장 근무를 시작할 수 없으며 즉시 집으로 돌아가 자택 격리를 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ph.lacounty.gov/covidquarantine에 있는 격리 지침을 제공하십시오.
 - 위에서 언급한 증상 중 어떤 증상이라도 보이거나 현재 고립 명령을 수행 중인 사람은 입장 또는 현장 근무를 시작할 수 없으며 즉시 집으로 돌아가 자택 고립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ph.lacounty.gov/covidisolation에 있는 고립 지침을 제공하십시오.
- 한 명 이상의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COVID-19(사례)와 같은 증상이 있다고 알리면, 고용주는 해당 사례자(들)가 자택 고립하도록 하고, 작업장에서 사례자(들)에게 노출된 모든 직원을 즉시 자가 격리하도록 하는 계획 또는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주의 계획은 직장에서 추가 노출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COVID-19 통제 조치를 추가해야 할 수 있어야 하기에, 모든 격리 대상 직원에게 진단 검사를 제공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을 시설의 계획에 포함하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 직장 내에서 14일 이내에 3건 이상의 사례자를 확인한 경우, 고용주는 이 집단발병을 로스앤젤레스 공중 보건국에 (888) 397-3993 또는 (213) 240-7821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www.redcap.link/covidreport로 보고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집단발병이 확인되면 공중 보건국은 감염 통제 지침 및 권고, 기술적 지지 및 시설별 통제 조치를 포함한 집단발병 대응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공중 보건국은 집단발병 조사를 위해 시설에 사례관리자를 배정하여 시설의 대응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공중 보건국은 사례의 집단발병이 COVID-19 창월에 해당되는지 결정하기 위해 시설의 즉각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 다른 사람과 접촉해야 하는 직원에게 코와 입을 가리는 적절한 안면 마스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LAC DPH의 COVID-19 마스크 웹페이지 <http://publichealth.lacounty.gov/acd/ncorona2019/masks>를 참조하십시오. 직원은 근무 중에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을 때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안면 마스크를

² COVID-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란 2회 접종 COVID-19 백신(예: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또는 모더나)의 2차 접종 후 이(2) 주 이상 경과, 또는 1회 접종 COVID-19 백신(예: 존슨앤존슨(J&J/얀센)의 접종 후 이(2) 주 이상 경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착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받은 직원은 건강 상태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아래에 위생 천이 달린 안면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정부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천이 턱 아래에 딱 맞게 제작된 안면보호대가 선호됩니다. 단방향 밸브가 있는 마스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 ❑ 고객과 정기적으로 밀접 접촉하거나, 폐쇄된 실내 공간에서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고객과 함께 있어야 하는 직원(예: 입장 증상 검사를 실시하는 직원이나 식사를 서빙하는 직원)에게는 안면 마스크 위에 착용해야 하는 안면보호대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COVID-19 확산 위험이 더 높은 점을 감안해, 실내에서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고객과 밀접 접촉하는 직원에게는 잘 맞는 N95(선호), KN95, 또는 이중 마스크 등과 같은 입자가 작은 에어로졸 확산 방지에 좀더 효과적인 마스크를 제공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LA 카운티 DPH의 COVID-19 마스크 웹페이지 <https://publichealth.lacounty.gov/masks>를 참조하십시오.
- ❑ 고용주에게 허용되는 COVID-19 예방접종 완료 증명서를 제시한 직원은 안면보호대 착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면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필수입니다. COVID-19 예방접종 완료 증명서를 제시하고 안면보호대를 착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예방접종 완료 직원이 있는 경우, 고용주는 각 직원이 허용가능한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했다는 기록을 서면 문서로 보관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보여준 예방접종 완료 증명서의 사본을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 COVID-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란 2회 접종 백신(예: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또는 모더나)의 2차 접종 후 2주 이상 경과, 또는 1회 접종 백신(예: 존슨앤존슨[J&J]/얀센)의 접종 후 2주 이상 경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직원이 고용주에게 COVID-19 예방접종 완료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다음 증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카드(예방접종한 사람의 이름, 접종한 백신의 유형 및 마지막 접종 날짜를 포함) 또는 별도의 문서인 예방접종 카드의 사진 또는 전화기 또는 전자 장치에 저장된 참석자의 백신 카드 사진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예방접종 전체 문서(예방접종한 사람의 이름 및, COVID-19 예방접종 완료 사실에 대한 확인을 포함).
- ❑ 직원들에게 매일 안면 마스크를 세탁 (적용될 경우) 또는 교체하라고 지시합니다.
- ❑ 직원들이 마스크를 일관되고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신체적으로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안전하게 벗을 수 있는 휴식 시간 외에는 식사를 하거나 음료를 마시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직원은 식사를 하거나 음료수를 마실 때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최소 6피트 거리를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야외에서 다른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식사를 하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것이 선호됩니다. 큐비클이나 작업대에서 식사를 하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것이 직원들 간에 더 넓은 거리를 제공하거나 직원들 사이에 장벽이 설치되어 있다면, 휴게실에서 식사를 하는 것보다는 큐비클이나 작업대에서 식사를 하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것이 선호됩니다.

 - 직원들이 식사 및/또는 휴식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공간 또는 구역은 수용인원을 감소시키고 직원들 간의 거리를 최대화합니다. 이는 다음을 통해 달성됩니다:
 - 식사 또는 휴식을 위해 사용하는 공간 또는 구역에 개인들 간 최소 6피트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최대 수용인원 게시하기, 그리고
 - 식사 및 휴식을 위해 사용하는 공간 또는 구역에서 휴식 또는 식사 시간을 엇갈리게 배정하기, 그리고
 - 테이블을 최소 8피트 간격으로 배치하기, 의자 사이에 6피트 간격 보장하기, 수용인원을 줄이기 위해 의자를 제거하거나 의자에 테이프를 사용금지 표시하기, 얼굴을 마주하는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의자 배치하기. 바이러스의 확산을 더욱 방지하기 위해 칸막이 사용이 권장되지만, 이를 수용인원 줄이기 및 신체적 거리 유지하기의 대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 직원이 물에 들어갈 때는 안면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 ❑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엇갈리게 배치하거나 교대로 근무하게 해서, 수영장에 동시에 상주하는 직원의 수를

제한합니다.

- 소독제 및 관련 용품을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장소에 비치합니다:

- COVID-19에 효과적인 손 소독제를 모든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장소에 비치합니다:

- 직원들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잦은 휴식 시간을 허용합니다.
- 본 프로토콜 사본을 모든 직원에게 배포합니다.
- 고용 조건과 관련된 것 이외의 본 점검표에 설명된 모든 정책은 배달 직원 및 제3자로 사내에 머무는 다른 회사 직원에게도 모두 적용됩니다.
- 선택 사항 - 기타 조치를 설명하십시오:

B.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한 확실한 조치

- 야외 수영장은 일상적인 사용을 위해 개방할 수 있습니다. 수용 시설의 사용은 모든 수영장 이용자가 다른 가구의 구성원과 6피트의 신체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반드시 제한되어야 합니다.
 - 허용된 최대 수영장 수용인원: _____
- 실내 운영. 실내 수영장, 화장실, 샤워실, 한증막, 탈의실을 포함한 실내의 수영장 운영은 해당 건축법 또는 소방법에 따라 시설의 최대 실내 수용인원의 50%로 제한합니다. 이런 실내 시설의 운영은 또한 카운티의 체육관 및 헬스장 프로토콜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시설에 제한된 최대 고객 수: _____
- 야외 온수 욕조/스파/자쿠지는 가구 일행의 사용 또는 다른 가구의 구성원과 6피트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방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이용자가 COVID-19 예방접종을 완료했거나, 한 가구의 구성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예방접종을 완료했고, 가구에 함께 사는 구성원이 COVID-19에 걸리면 중병으로 발전할 위험이 큰 고위험군이 없는 경우에는 6피트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거주 가정에 수영장 수용인원 제한에 대해 알리십시오.
- 수영장 이용에 예약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십시오. 예를 들어, 왕복 수영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체 레인 예약 및 한 가족이 사용할 수 있도록 레인 반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이용자가 COVID-19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이상, 모든 왕복 수영자는 함께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과 6피트의 신체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에 왕복 수영 레인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인명구조요원이 있는 경우, 인명구조요원은 손 씻기, 안면 마스크 착용 또는 다른 사람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사람 또는 거주자 그룹이 위에서 설명한 수영장 이용자의 최대 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및 확인 업무를 담당할 것을 권장합니다. 지정된 사람은 또한 모든 중간 지침 준수 여부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모든 이용자가 COVID-19 예방접종을 완료했거나, 한 가구의 구성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예방접종을 완료했고, 가구에 함께 사는 구성원이 COVID-19에 걸리면 중병으로 발전할 위험이 큰 고위험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함께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과 최소 6피트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음)를 확실히 하는 조치를 적용하였습니다.

- 주법에 따라 수영장 주변에 4피트만큼 갑판 공간을 분명하게 유지하면서, 신체적 거리 두기 요건을 돕기 위해 갑판 및 수영장 주변 기타 공간의 배치를 변경합니다. 여기에는 의자 제거나 일부 공간을 사용 못 하도록 테이프로 경계 표시를 해 두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거주자와 수영하는 사람들이 물 안팎에서 최소 6피트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물리적 신호 또는 안내판(예: 수영장의 레인 또는 갑판의 의자와 테이블)과 표지판 및 시각적 신호(예: 갑판, 바닥 또는 인도 위의 테이프 표시)를 제공합니다.
- 아파트, 콘도, 입주자 협회에 거주하지 않는 손님's 수영장 시설 이용 **금지를 고려하십시오.**
- 수영장 **에서** 열리는 파티나 모임은 카운티의 **비공식 친목 모임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C. 감염 통제를 위한 조치

- HVAC 시스템은 정상 작동 상태이며, 가능한 최대로 작동 시켜 환기를 증가시킵니다. 효과적인 환기가 작은 입자의 공기 매개 확산을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의 하나입니다. 휴대용 고효율 공기청정기 설치, 건물의 공기 필터를 최고 효율로 업그레이드, 모든 사무실 및 기타 공간의 외부 공기 및 환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른 개조 등을 고려해 봅니다. 자세한 정보는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국의 **실내 환경을 위한 환기, 여과 및 공기의 질에 대한 예비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참고: 환기 및 기타 실내 공기의 질 개선은 안면 마스크 착용(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 특정 고위험 환경 제외), 사람들과 최소 6피트 거리두기, 자주 손 씻기, 및 다른 가구의 사람들이 모이는 활동 제한하기와 같은 의무 예방지침에 추가로 시행할 수 있지만, 대체되지는 않습니다.
 - 창문과 문을 열거나 선풍기나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실외 공기의 유입 및 순환을 최대한 증가시킵니다. 휴대용 고효율 공기청정기 설치, 건물의 공기 필터를 최고급으로 교체, 모든 작업장에 외부 공기의 유입 및 환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개조 등을 고려해 봅니다.
 - 하지만 이것이 직원, 거주자 또는 수영하는 사람의 안전에 위험이 된다면 창문과 문을 열지 않습니다.
- 시설에 도착하는 방문객들에게 시설의 실내 또는 부지에서는 (물속에 있을 때 제외) 항상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이는 모든 성인과 만 2세 이상의 어린이에게 적용됩니다.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받은 사람은 건강 상태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아래에 위생 천이 부착된 안면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정부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천이 턱 아래에 딱 맞게 **제작된** 안면보호대가 선호됩니다. 단방향 밸브가 있는 마스크를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 카운티의 증상 검사 지침에 따라 방문객이 시설에 입장하기 전에 **입장 증상 검사**를 수행합니다. 검사에는 기침, 숨가쁨, 호흡곤란, 발열이나 오한, 또는 이전에 없던 미각이나 후각 상실 그리고 현재 고립 또는 격리 명령을 수행 중인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고객에게 직접 시행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으로 체크인할 때 검사 또는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시설에 들어올 수 없다는 **안내판**을 시설 입구에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음성 증상 검사(출입 허가). 증상이 없고 지난 10일 동안 COVID-19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은 사람에게 당일 입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양성 증상 검사(출입 비허가):
 - 지난 10일 동안 COVID-19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현재 격리 명령을 수행 중인 사람은 입장할 수 없으며 즉시 집으로 돌아가 자택 격리를 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ph.lacounty.gov/covidquarantine에 있는 격리 지침을 제공하십시오.
 - 위에서 언급한 증상 중 어떤 증상이라도 보이거나 현재 고립 명령을 수행 중인 사람은 입장할 수 없으며 즉시 집으로 돌아가 자택 고립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ph.lacounty.gov/covidisolation에 있는 고립 지침을 제공하십시오.

-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화학 물질이 소독에 적합한지, 수영장의 안전 장비가 적절한지 평가하는 수영장 안전 점검을 수행합니다.
 - 적절한 운영과 유지보수로 물속의 바이러스를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 운영되고 있지 않던 시설의 경우 시설 배관에 있던 오래된 물을 신선하고 안전한 물로 교체해줘야 하므로 시설을 재개하기 전에 온수 및 냉수를 각 5분 동안 틀어 물을 내려줍니다. 여기에는 분수식 식수대, 장식용 분수대, 온수 욕조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자주 만지는 표면과 자주 사용하는 공유 물건은 사용했을 경우 세척 및 소독 계획을 실시합니다. EPA 승인 소독제를 사용합니다. 다음 시설은 아래에 기재된 빈도로 그러나 최소 하루에 한 번 다음 일정에 따라 청소 및 소독됩니다.
 - 난간 및 미끄럼틀 _____
 - 라운지 의자, 테이블 _____
 - 화장실 문손잡이 및 표면, 세면대, 기저귀 교환대 및 샤워 시설 _____
 - 공용 시설 _____
 - 화장실 _____
 - 기타 _____
- 위생 건강에 필요한 소모품을 적절히 확보합니다. 소모품에는 거주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비누, 60% 알코올이 함유된 손 소독제, 종이 수건, 휴지 및 휴지통이 포함됩니다.
- 제거하지 않은 가구(예: 라운지 의자)나 기타 공용 물품은 최소 하루에 한 번 청소 및 소독합니다. 거주자는 가구나 공용 물품을 사용한 후 소독하기 위한 물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거주민에게 본인의 가구나 흔히 쓰는 물건을 준비해 오라고 권장합니다.
- 사람들은 수영장에 자신의 수건을 가지고 와야 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수건을 같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감염 확산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수영장 갑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이나 음료를 나눠주면 안 되고, 한 가족 구성원들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음식이나 음료를 공유하면 안 됩니다.
- 분수식 식수대와 정수기는 작동을 차단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D. 일반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조치

- 본 프로토콜 사본 또는 시설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COVID-19 안전 준수 인증서를 받은 시설은 인증서 사본을 수영 시설의 모든 공공 입구에 게시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COVID-19 안전 준수 자가 인증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싶으시면, <http://publichealth.lacounty.gov/eh/covid19cert.htm>를 방문하십시오. 시설은 요청 시 검토할 수 있도록 시설 현장에 프로토콜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 수영장 시설의 각 공공 입구에 아프거나 COVID-19와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 집에 머무르라는 내용을 수영장 사용자들에게 알리는 안내판을 게시합니다.
- 수영장 이용자들에게 가능한 한 본인의 가족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과 6피트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상기하는 안내판을 게시합니다.
- 모든 거주민과 수영하는 사람들이 수영장 시설에 입장할 때 손을 자주 씻거나 소독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안내판을 게시합니다. 60% 알코올 기반 손 소독제를 거주민에게 제공하거나 준비해 오라고 요청합니다.
- 거주민에게 공용 구역을 통해 수영장에서 공용 화장실에 다녀 올 때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안내판을 게시합니다. 수영하는 사람들이 물에 들어갈 때는 **안면 마스크**를 벗으라고
상기시킵니다.

E. 일반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조치

- 이동에 제한이 있거나 공공장소에서 위험성이 높은 의 사회적 거리 거주자의 수영장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합니다.

또한 미 질병 관리 예방 센터(CDC)의 사회적 거리두기 및 시설/표면 소독 절차에 관한 지침을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php/water.htm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